

2021 제3호

최신외국법제정보

Issue Brief on Foreign Laws

맞춤형 법제정보

- 멕시코 반부패 관련 법제 현황
- 칠레 반부패 관련 법제 현황
- 페루 반부패 관련 법제 현황

외국법제동향

- 이탈리아 COVID-19 관련 한시적 해고제한법의 주요 내용
- 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법(안)」의 제계 및 주요 내용
- 중국 「온라인거래 감독관리방법」의 입법 배경 및 주요 내용
- 미국 디지털 플랫폼 규제 관련 입법동향
- 프랑스 보조생식 관련 「생명윤리법」의 입법동향

2021 제3호

최신외국법제정보

Issue Brief on Foreign Laws

프랑스 보조생식 관련 「생명윤리법」의 입법동향

왕승혜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I. 들어가며

프랑스는 첨단의학기술의 하나인 보조생식기술(補助生殖技術: la Procréation Médicalement Assistée(PMA))¹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최근에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법제화하기 위한 입법절차가 진행되었다. 프랑스 정부가 제출한 이 법률안의 이름은 「생명윤리법 개정법률안(Le projet de loi relatif à la bioéthique)」²이며,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하여 양원에서 표결이 이루어진 이후에 헌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헌법에 합치하는 것으로 확인하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며 2021. 8. 2.자 프랑스 정부 관보에 고시되었다.³

프랑스 「생명윤리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남성-여성으로 구성된 혼인 중의 배우자인 여성에게만 허용되는 인공수정, 시험관시술(IVF)과 같은 보조생식기술을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비혼 여성 또는 이성혼(異性婚) 이외의 다양한 동거형태의 여성 등 “모든 여성”에게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다.

1 '보조생식기술(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이란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하게 된 남녀간의 성교라는 자연적 방법 이외의 생식 기술 방법을 통칭한다. 보조생식 외에 인공생식(artificial reproduction)이라는 말도 사용되며 유사한 의미로 쓰인다. 2007년 11월 한국가족법학회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가족법의 대응'을 학술대회의 주제로 다루었으며, 이때 인공생식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보조생식기술은 인위적으로 배아를 합체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임신의 효율을 올리거나 착상 전에 유전자 검사 등을 위해 난자, 정자 혹은 배아를 대상으로 시술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인공생식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된다. '인공 수태술(artificial reproductive technolog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윤진수. 보조생식기술 (補助生殖技術)의 가족법적 쟁점 (家族法的 爭點)에 대한 근래의 동향 (動向). 서울대학교 법학, 2008, 49권 2호. 66-96.

2 2019. 7. 24. 프랑스 하원에 프랑스 정부가 제출한 개정법률안(Projet de loi relatif à la bioéthique, n° 2187, déposé(e) le mercredi 24 juillet 2019)

3 프랑스 정부 관보, 2021. 8. 3.자. "2021. 8. 2.자 법률 제2021-1017호 생명윤리에 관한 법률(Loi n° 2021-1017 du 2 août 2021 LOI n° 2021-1017 du 2 août 2021 relative à la bioéthique). Publiée au Journal Officiel du 3 août 2021"

II. 논의 배경

첨단의학기술인 보조생식기술을 모든 여성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과 보조생식기술을 적용하여 출생한 자녀의 복리와 알권리를 우선하는 입장이 대립하면서 4년 동안 입법안을 둘러싼 친반 논쟁이 계속되었다.⁴ 2021. 7. 29. 현재 프랑스 헌법위원회에서 「생명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종국 결정이 선고되면서 이 법률안 헌법에 합치하는 법률로서 적법하게 발효되었다.⁵ 개정 법률에는 모든 여성에게 보조생식기술을 적용하는 것에 상응하여 보조생식기술을 적용하여 출생한 자녀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비혼 여성과 동거 구성원인 여성에게 보조생식기술을 확대 적용하는 「생명윤리법」 개정안은 2017년 마크롱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정부제출 입법안으로 발의된 법안이다. 프랑스에서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정부안)은 프랑스 정부를 대표하는 총리의 명의로 제안된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국회의원과 정부가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즉 상원과 하원을 구성하는 양원의 '의원'과 정부를 대표하는 '총리'가 각각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공동으로 가진다.⁶ 입법권의 내용은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는 법안발의(l'initiative des lois)와 법률안을 표결하여 확정할 수 있는 의결(le vote)로 이루어지는데, 법안발의는 양원의 의원과 총리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반면에, 법률안을 표결하는 '의결'의 권한 행사는 양원 의회만이 행사할 수 있는 고유한 권한으로 프랑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⁷ 법안발의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에 따라 법안의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용어를 다르게 사용하는데, 총리가 제출하는 법률안은 'le projet'라고 하고, 의회가 제출하는 법률안은 'la proposition'이라고 지칭한다. 프랑스 「생명윤리법」 개정안은 'le projet'라는 용어로 시작하며, 법률안의 제목에 사용된 용어를 통하여 해당 개정안이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의 입법절차는 정부에서 진행되는 입법절차와 의회제출 이후의 입법절차로 나누어진다. 정부안이 의회로 제출된 이후의 입법절차는 의회에서 제출하는 법률안의 입법절차와 동일하다. 정부안이 의회에 제출되기 전인 정부입법 단계에서 관계 부처 협의와 국참사원의 심의를 거치며 입법영향평가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한다.⁸ 「생명윤리법」 개정안 총 32개의 조문에 대한 입법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는 2019. 7. 23. 제출되었다.⁹

4 프랑스 하원 홈페이지 'Bioéthique' 입법자료. Accueil > Liste des dossiers législatifs>Bioéthique.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5/dossiers/bioethique_2?etape=15-AN1-DEPOT (최종방문일: 2021년 8월 15일)

5 프랑스 헌법위원회 2021. 8. 2.자 결정 사건번호 2021-824 (Conseil constitutionnel, Décision n° 2021-821 DC du 29 juillet 2021)

6 프랑스 헌법 제39조 제1문 "L'initiative des lois appartient concurremment au Premier ministre et aux membres du Parlement"(법률의 발의는 총리와 의회의 의원에게 공동으로 부여된다)

7 프랑스 헌법 제24조 제1문은 "의회가 법률안을 표결한다(Le Parlement vote la loi)"라고 규정하고 있다.

8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프랑스 입법절차. 2016. 5. 31.자 게시자료. 세계법제정보 연구보고서 5.

9 프랑스 하원 입법자료. 「생명윤리법」 개정안 입법영향평가보고서. ÉTUDE D'IMPACT PROJET DE LOI RELATIF À LA BIOÉTHIQUE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5/textes/l15b2187_etude-impact.pdf (최종방문일: 2021년 8월 15일)

III. 법안의 주요 내용

1. 생활공동체 구성의 변화

「생명윤리법」 개정안은 2013년에 프랑스에서 법적으로 제도화된 비양성(非兩性) 동거생활공동체에 이어 최근 프랑스의 가족구성에 나타나는 변화를 반영한다. 정부제출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 프랑스의 국사원이 작성하는 검토 보고서에서는 다양한 생활공동체를 영위하는 구성원 각자에게 동등한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는 입법 취지가 개정안에 반영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¹⁰

2. 보조생식기술 관련 내용

프랑스 「생명윤리법」 개정법률안은 의료기술적 보조에 의한 생식('la Procréation Médicalement Assistée (PMA)')이라는 의료적 방법을 동거생활공동체의 구성원과 비혼 여성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힘으로써 보조생식기술을 통하여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권리로 보편적으로 보장할 것(le droit d'accès aux origines des enfants nés d'une PMA)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개정 전 법률에 따르면 이성혼의 부부를 구성하는 여성 배우자에 대해서만 적법하게 보조생식술의 시술을 시행할 수 있었다.

인공수정, 시험관 아기 시술의 대상 범위 확대는 이 개정법률안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가장 많은 논란을 낳았던 부분이기도 하다. 최근 프랑스의 한 통계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비혼 여성에게 인공수정을 허용하는 것에 찬성하는 프랑스인은 68%, 동거 구성원인 여성에게 인공수정을 허용하는 것에 찬성하는 프랑스인은 65%로 나타났다.¹¹ 개정안의 논의가 진행되는 중에 2019년 10월 초 파리에서는 보수단체, 가톨릭 단체 등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의 시위 행렬이 이어지기도 하였다.¹² 반대하는 입장은 자녀로서 누려야 하는 부모를 향유할 인간 본연의 자연적 권리로 주장하였다. 해당 법안이 첨단생명공학기술인 보조생식기술을 적용하여 태어난 자녀들로부터 아버지(親生父)를 알 권리와 아버지로부터 보호와 양육을 받을 수 있는 자연적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쟁점을 반영하여 개정 법률에는 모든 여성에게 보조생식기술을 적용하는 것에 상응하여 보조생식기술을 적용하여 출생한 자녀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보조생식기술을 적용하여 출생한 자녀가 성인이 되어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정자기증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고 신원이 미상인 때에는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권리를

10 프랑스 국참사원(Conseil d'État), Assemblée générale Section sociale Section de l'intérieur N ° 397.993 AVIS SUR UN PROJET DE LOI relatif à la bioéthique. 2019. 7. 18.

11 프랑스 언론기사. "PMA pour toutes : les opposants au projet de loi se mobilisent à Paris"(모두를 위한 보조생식술: 법률안에 반대하는 파리시민 동요), FranceInfo. 2019. 10. 6.자.

12 앞 주.

보호하기 위하여 정자기증자의 개인정보와 기증에 관한 정보는 보건부장관이 관할하는 ‘생명의학원 (l’Agence de la biomédecine)’에서 집중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¹³

3. 의료급여 적용 대상의 확대

「생명윤리법」 개정 법률은 보조생식의료와 관련한 의료비 부담의 공적 문제와 같은 의료 혜택을 모든 여성에게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 전 법률에 따르면 남성-여성 이성혼에 속하는 배우자인 여성에 대해서만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보조생식기술의 시술이 가능하였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조생식기술을 적용한 의료적 처치에 대해서 건강보험에 의한 의료급여를 수급할 자격이 있었다. 그러나 개정 법률은 이와 같은 제한을 완화하여 「생명윤리법」에 따른 보조생식기술을 시술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의료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다.

4. 의료 목적 이외의 생식세포 채취 가능

이번 「생명윤리법」 개정 법률은 인공수정 시술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외에도, 생식세포 기증 및 보존 그리고 기증자 정보 공개 여부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 법에 따르면 생식세포 기증은 혼인 중의 구성원 일방이 다른 혼인 중의 구성원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기증을 할 때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개정 법률에 따라 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생식세포의 기증이 가능하다. 또한 난자, 정자의 냉동보관과 같은 생식세포 보존시술은, 이전까지는 기증을 하거나 질병이 있는 경우, 불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료에 대비하여 제한된 경우에만 가능했었으나, 이와 같은 제한을 두지 않고 연령 제한만을 규정하고 있다. 남성의 경우는 32세와 45세 사이, 여성의 경우 32세와 37세 사이 보존이 가능하다. 보존된 생식세포는 이후 인공수정에 사용하게 될 경우, 여성의 경우 43세까지, 남성은 59세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기증된 생식세포를 통해 태어난 자녀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할 경우 기증자 관련 정보와 신원확인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법에 따르면 기증자의 신분은 익명으로 보존된다. 향후에는 기증자도 본인의 신분을 밝힐 것인지 선택을 할 수 있다.

5. 기타

다른 한편 의료 목적 이외의 정자 보존(*la conservation des gamètes sans motif médical*)이 현재까지는 금지되어 있으나, 개정 법률에는 의료 목적 이외의 정자 보존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생명윤리법」 개정안은 배아와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la recherche sur les embryons et les cellules souches*)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13 프랑스 공화국 관보 2021. 8. 3.자 공포 법률 ‘*LOI no 2021-1017 du 2 août 2021 relative à la bioéthique*’ 제5조

IV. 개정안 입법절차 진행 경과

「생명윤리법」 개정안의 입법절차 일정은 아래의 표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1 「생명윤리법」 개정안의 입법절차 일정

2019. 7. 24.	2019. 10. 15.	2021. 6. 29.	2021. 7. 21.	2021. 7. 29.
정부안 하원 제출	하원 제1독회 표결	양원합동위원회 의결	헌법위원회 위헌재청	헌법위원회 결정 선고

1. 정부안 제출(2019. 7. 24.)

정식 입법절차와 관련한 경과를 살펴보면, 최초로 「생명윤리법」 개정안은 2019. 7. 24. 프랑스 하원에 제출되었다. 프랑스 헌법에서 규정하는 입법절차에 따라 「생명윤리법」 개정안은 동일한 내용의 입법안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통과되어야 법률로서 확정된다. 확정된 법률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부서한 후 프랑스 정부 관보에 공포하면 법률로서 효력을 발생한다.¹⁴

정부입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국사원의 필수적 자문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후 정부안에 입법영향보고서를 첨부하여 하원 또는 상원에 회부되는데, 재정수반 법률안은 하원에 우선 제출하고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안은 상원에 우선 제출하는 준칙에 따라야 하는 외에는 총리의 재량으로 하원 또는 상원에 동시에 또는 순차로 제출한다.

2. 하원 상임위원회 심의 및 수정안에 대한 표결(2019. 10. 15.)

정부안에 대한 입법절차에 따라 정부제출법률안은 최초로 하원에 제출되었으며, 「생명윤리법」 개정안에 대하여 프랑스의 하원은 다수가 찬성하는 입장인데 반하여 상원은 다수가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여 하원에서는 통과되었고, 상원에서는 부결되었다.

2019. 10. 15. 하원의 법률안 전체에 대한 제1차 표결 결과는 아래 그림1과 같다. 유효투표수는 545표이며, 찬성 359표, 반대 114표, 기권이 72표로 집계되었다. 표결 대상 법안은 의무적으로 기명으로 표결하여야 하는 법안은 아니었지만, 임의로 기명으로 표결한 수는 473표로 집계되었다. 제1독회 표결조건에서 절대과반유효투표수는 237표인데, 이를 넘어서는 359표가 찬성하였다. 마크롱 대통령 소속 정당인 ‘La République en Marche’¹⁵(의석수/총의석수, 304/577) 소속 의원들은 찬성

14 프랑스 헌법

15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La République en Marche’은 ‘전진하는 공화국’(전진당)이라는 의미를 갖는 표현이다. 보수와 중도의 연합정당으로 평가한다. 1958년 이후 제5공화국 체제에서 양당 체제의 기반을 구축한 드골의 중도우파 공화당계 열파와 중도좌파 정당인 사회당은 2017년 5월 프랑스 대선 이후 재조정되는 국면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7년 6월 총선에서도 신생정당인 중도연합의 전진당이 다수의석을 확보하였다. 2017년 총선 이후 프랑스 하원의 의석 분포는 중도연합이 350석으로 하원 전체 의석의 60.66%를 차지한다. 김면희, 유럽정치의 최근 동향과 정당체제의 변화, 유럽연구, 2017, 35.3: 1-28. 윤석준, “2017 프랑스 대선 및 총선 분석,” 「세종정책브리핑」 2017-12 (2017. 06. 27), pp.2-4.

250표, 반대 8표, 무의사 25표, 무표결 1표로 집계되어 전진당 소속정당의 의원 다수가 찬성하였다. 이에 반하여 가장 많은 수의 반대표는 ‘Les Républicains’(의석수/총의석수, 104/577) 소속 의원들이 이 다수였으며, 반대 75표, 찬성 12표, 무의사 15표로 공화당 소속정당의 의원 다수가 반대하였다.

그림1 하원의 법률안 전체에 대한 제1차 표결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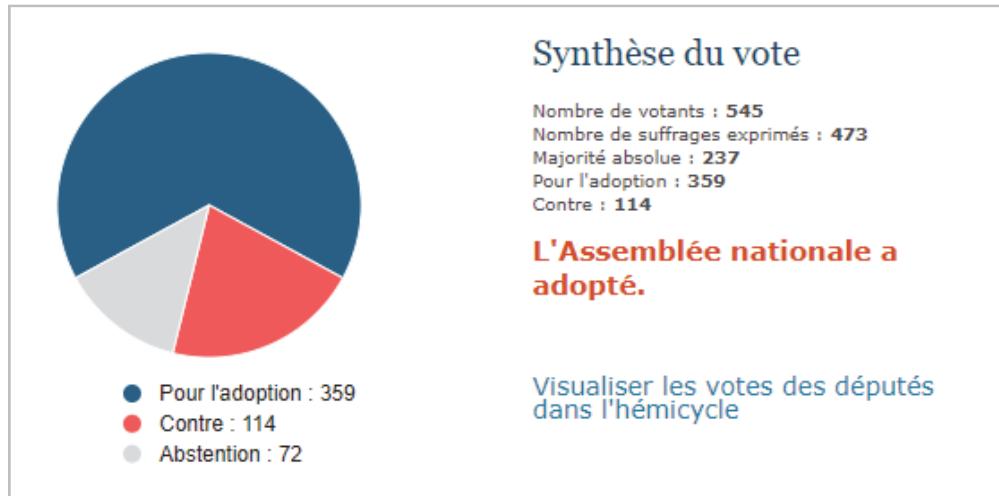


그림2 정당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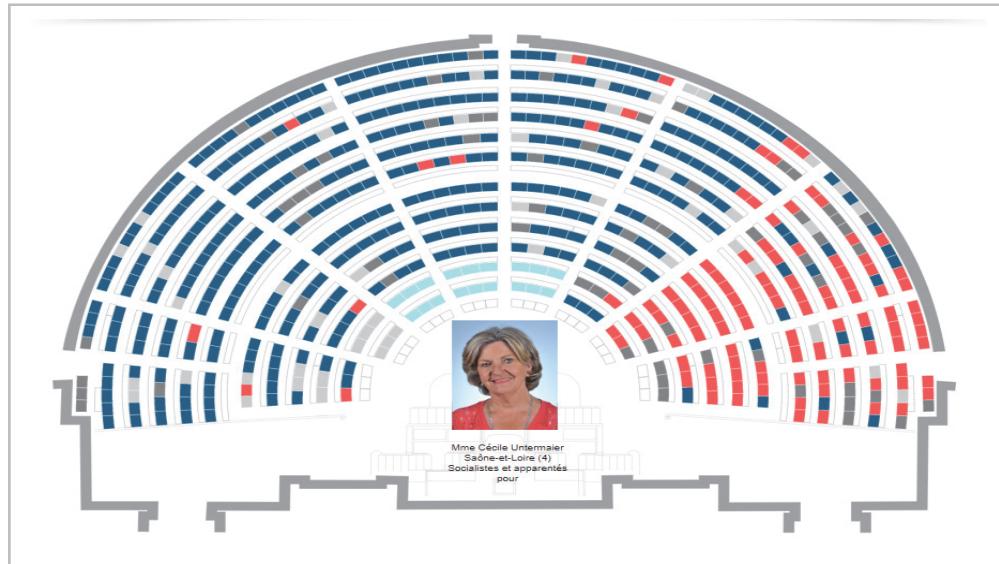


그림2와 비교할 때 「생명윤리법」 개정안에 반대하여 표결한 하원의원은 대체로 보수 성향의 정당에 속하는 의원임을 파악할 수 있다.

3. 양원합동위원회의 표결(2021. 6. 29.)

상원과 하원에서 입법안에 대한 표결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양원합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동표결 하며 합동표결에서 부결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하원에서 표결한다.¹⁶ 「생명윤리법」 개정안에 대하여 양원의 의결 결과가 불일치함에 따라 하원과 상원의 합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표결하였으며, 2021. 2. 17. 양원합동위원회에서 법안이 부결되었다. 이후 일부 조문이 수정되었으며,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프랑스 하원은 2021. 6. 9. 다수가 찬성하는 표결을 하였고, 상원은 2021. 6. 24. 다수가 반대하여 부결되었다. 프랑스 헌법에서 규정하는 입법절차에 따라 양원합동위원회에서 합치하는 합동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는 하원이 최종적으로 표결권을 가진다. 이에 따라 프랑스 하원은 2021. 6. 29. 개정안에 대해서 종국표결을 하였으며, 종국표결에서는 다수의 하원의원이 찬성하였다. 2021. 6. 29. 표결 결과에 따라 「생명윤리법」 개정 법률은 법률로써 확정되었다. 그러나 의결이 이루어진 당일 양원합동위원회에서 반대 표결을 한 80명의 의원들이 프랑스 헌법위원회에 사전적 규범통제절차에 해당하는 위헌법률심사를 제청하여 개정안의 효력이 정지되었다.

4. 헌법위원회 위헌심사 제청(2021. 7. 21.)

양원합동위원회에서 종국표결이 이루어진 「생명윤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2021. 7. 2. 프랑스 하원 의원 60명이 연서하여 헌법위원회에 법안 공포 전 위헌심사 청구가 이루어졌다. 헌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프랑스 대통령, 총리, 상원이나 하원 의장, 하원의원 60명 또는 상원의원 60명은 채택된 법안이 공포되기 전에 헌법위원회 위헌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헌법위원회는 한 달의 기한 내에 결정을 내릴 수 있으나, 이 기한은 사안이 긴급한 경우 총리의 요청에 의해 8일까지 단축될 수 있다. 헌법위원회에서 위헌심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해당 기간만큼 법안의 공포 기한이 연기된다.

5. 헌법위원회 결정 선고(2021. 7. 29.)

프랑스 헌법위원회¹⁷는 「생명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심사 결과 「생명윤리법」 개정안은 헌법에 불합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종국결정을 선고하였다.¹⁸

16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프랑스 입법절차. 2016.05.31.자 게시자료. 세계법제정보 연구보고서

17 프랑스의 헌법위원회(Le Conseil Constitutionnel)은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프랑스의 헌법기관이다. 헌법위원회의 위원은 9인으로 구성되며, 공화국의 대통령과 양원의장에 의해 지명되고 임기는 9년 단임이다. 매 3년마다 1/3 을 개임하며, 공화국의 대통령, 하원의장, 상원의장이 각 1인을 지명한다. 프랑스의 헌법위원회는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안에 대하여 법률이 발효되기 전에 공화국 헌법에 불합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사전적인 규범통제권한을 행사한다. 프랑스 헌법위원회 웹사이트 게시자료 > 업무 안내 <https://www.conseil-constitutionnel.fr/le-conseil-constitutionnel/presentation-generale> (최종방문일: 2021년 8월 15일)

18 프랑스 헌법위원회 2021. 8. 2.자 결정문 사건번호 2021-824 (Conseil constitutionnel, Décision n° 2021-821 DC du 29 juillet 2021) 관련 보도자료(Communiqué de presse). 프랑스 헌법위원회 게시자료. <https://www.conseil-constitutionnel.fr/actualites/communique/decision-n-2021-821-dc-du-29-juillet-2021-communique-de-presse> (최종방문일: 2021년 8월 15일)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1. 7. 29. 선고한 결정문¹⁹에서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생명윤리법」 개정안의 내용 중에 어떠한 헌법불합치성도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여 「생명윤리법」 개정안의 효력이 적법하게 발효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선고한 결정이 발표되자 프랑스 보건부장관은 시행령을 제정하여 모든 여성이 보조생식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²⁰ 반면에 반대 표결 후 헌법위원회에 위헌심사 제청을 신청하였던 하원의원 Patrick Hetzel은 우생학적 시술의 금지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간과하는 헌법위원회는 스스로의 역할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²¹

V. 나가며

프랑스 「생명윤리법」 개정 법률은 첨단의학기술의 하나인 보조생식기술을 비혼여성과 동성동거 구성원인 모든 여성에게까지 확대 적용하고 이에 상응하여 자녀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생명공학원이라는 공적 기구를 통하여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은 7년차 시행일이 도래하는 시기에 법률의 내용을 재평가하여 개정 입법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명윤리법」과 관련하여 현재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논쟁과 시행 경과는 향후 「생명윤리법」의 개정 입법에 반영될 전망이다.

19 프랑스 헌법위원회 2021. 8. 2.자 결정 사건번호 2021-824 (Conseil constitutionnel, Décision n° 2021-821 DC du 29 juillet 2021)

20 프랑스 언론 보도자료 Valeurs 2021.7.29. > Accueil > Société > PMA : le Conseil constitutionnel valide le projet de loi bioéthique.

21 앞 주.

참고문헌

- 김면희, “유럽정치의 최근 동향과 정당체제의 변화”, 유럽연구, 2017.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wli/rsrchReprt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PageRowCnt=10&searchNtnlCls=4&searchNtnl=FR&pageIndex=1&CTS_SEQ=39404&AST_SEQ=107
- 윤석준, “2017 프랑스 대선 및 총선 분석,” 세종정책브리핑, 2017.
- 윤진수, “보조생식기술 (補助生殖技術)의 가족법적 쟁점(家族法的 爭點)에 대한 근래의 동향(動向)”, 서울대학교 법학, 2008.
- 프랑스 하원 입법자료, “생명윤리법 개정안 입법영향평가보고서”, ÉTUDE D’IMPACT PROJET DE LOI RELATIF À LA BIOÉTHIQUE,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5/textes/l15b2187_etude-impact.pdf
- 프랑스 하원 홈페이지,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5/dossiers/bioethique_2?etape=15-AN1-DEPOT
- 프랑스 헌법위원회 게시자료, <https://www.conseil-constitutionnel.fr/actualites/communique/decision-n-2021-821-dc-du-29-juillet-2021-communique-de-presse>
- 프랑스 헌법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conseil-constitutionnel.fr/le-conseil-constitutionnel/presentation-generale>



맞춤형 법제정보 신청 안내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팀은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외국 법제 조사 신청을 받아, 조사결과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내용 정보

- 주요 국가(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등)법령의 제·개정 내용
 - 국내 현안에 대한 외국 법제 현황 및 내용
 - 정부 입법 정책 수립에 필요한 외국 법령 정보
 - 정부 부처 관련 업무에 대한 법령 정보
- ※ 개인적인 연구(예, 학위논문 작성) 관련 및 단순 법령은 제외되며,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모호한 범위의 정보제공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www.klri.re.kr)를 통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 홈페이지 접속 → 하단의 수요자 맞춤 서비스 중 “맞춤형 외국법제정보 신청” Click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최신외국법제정보 담당자에게 메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메일주소 : foreignlaw@klri.re.kr
※ 신청시, 대상 국가 법령 및 제도의 명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셔야 합니다.

접수 및 문의



TEL. (044) 861-0471 FAX. (044) 868-1947
E-Mail. foreignlaw@klri.re.kr www.klri.re.kr

배포

- 정기간행물 형식으로 발간되고 있으며,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에 배포 중입니다.
- 신청하시는 경우 ‘최신외국법제정보’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미래혁신과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글로벌 입법
연구 플랫폼
한국법제연구원



발행일 2021년 8월 31일 | 발행인 김계홍 |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www.klri.re.kr)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15 한국법제연구원
TEL (044) 861-0300 | FAX (044) 868-9913

